

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 12. 19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인수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9일

(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인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 중 자문위원회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  
(안 제18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기업 애로지원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10인” 을 “20인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17조(생 략)</p> <p>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0인</u> 이내로 구성하며 기업인 각계 전문가,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1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20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